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권수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5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발 의 자 : 권수정 의원(1명)
찬 성 자 : 임종국, 황인구, 정진철,
강대호, 권영희, 김 경,
장인홍, 이호대, 김경우,
전병주, 이상훈, 최정순,
채유미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 상 제18조(성희롱 금지) 조항의 보완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의장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장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“(성희롱 금지)”를“(성희롱 금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장은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<u>성희롱 금지</u>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8조(<u>성희롱 금지 등</u>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장은 의원에 의한 성희롱 발 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,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